



입법예고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13호, 2005.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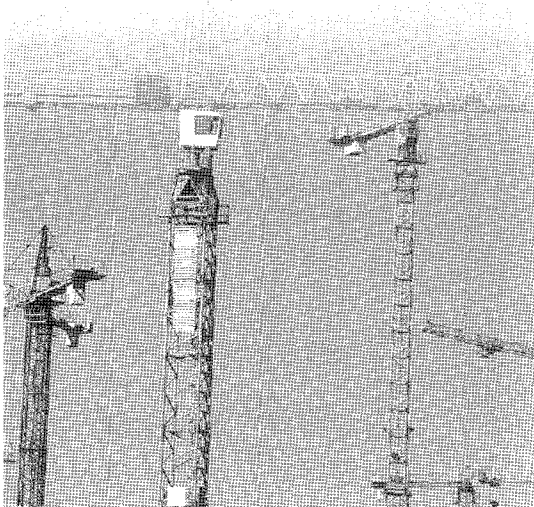
개정이유

투기지역내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 완화를 도모하여야는 것임.

주요내용

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함.

- 아파트 :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양도당시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단독주택 : 대지면적 170㎡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85㎡ 이하이며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이하(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한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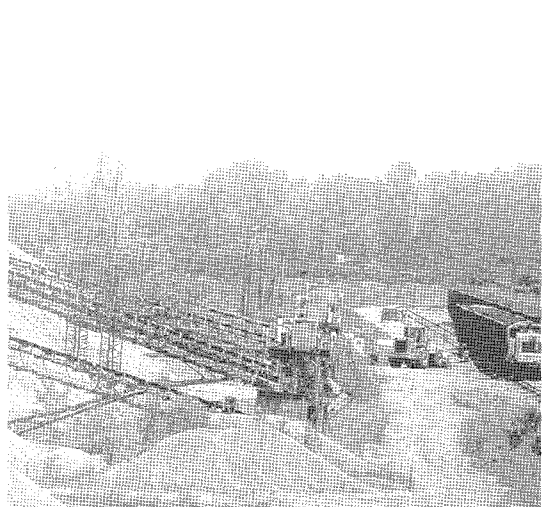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관련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18호)

허가대상 면적이 변경되는 지역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74호(2002.4.2), 제2002-248호(2002.9.26), 제2002-299호(2002.11.14), 제2003-31호(2003.2.11), 제2003-101호(2003.5.14), 제2003-264호(2003.11.25), 제2003-265호(2003.11.25), 제2003-266호(2003.11.25), 제2003-268호(2003.11.25), 제2004-295호(2004.11.25)로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미 해제된 지역은 제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역		면적
도시 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180㎡를 초과하는 토지





###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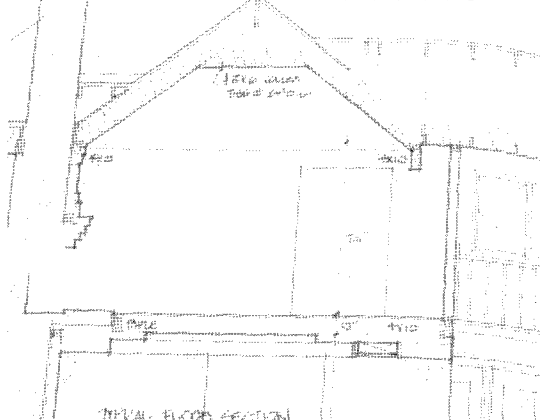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19호)

#### 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부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기타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운용하면서 제기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개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나. 부도가 발생한 임대사업장의 조기 정상화와 85㎡초과 중형임대주택 건설촉진을 위하여 부도발생 임대주택 및 중형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화자격을 완화
- 다. 분양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임대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요율 인하
- 라. 기존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5% 한도내에서 증액 허용
- 마. 소모성 자재의 종류 및 보수주기 명확화 등



###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25호)

#### 개정이유

공장건축물의 경우 현재는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불연재료를 내부마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화재위험이 적고 피난이 용이한 공장에 대하여는 내부마감재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재위험이 적고 피난이 용이한 1층 이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복합자재의 사용을 허용하여 건축비를 경감하고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함.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분에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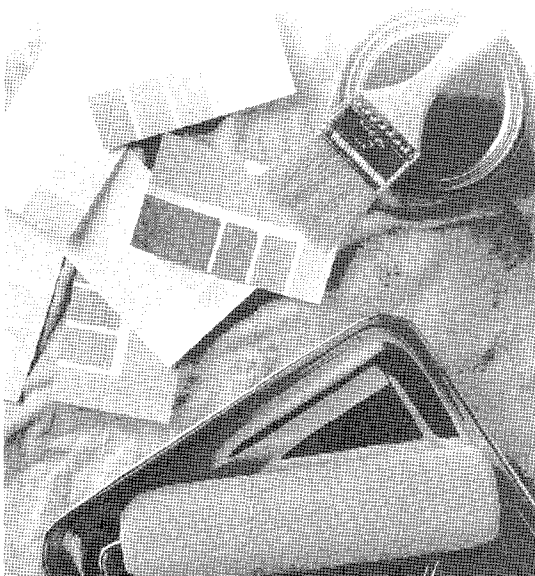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5호)

### 개정이유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재위험이 적은 소규모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복합자재를 성능시험과 상관없이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합자재 사용과 관련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건축물의 용도를 도축업 등 공정상 발화위험이 적은 65개 업종으로 정함.
- 나. 소규모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있는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다. 복합자재는 두께 0.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 및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난연 3등급이상의 심재등을 사용하도록 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24호, 2005.2.7)

###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신규수요를 창출하여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토록 개정·공포(법률 제7341호, 2005.1.27)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3억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함.
- 나. 신탁중앙회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를 3억원으로 함.

